

대법원 2007. 10. 26 선고 2005다33121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07. 10. 26 선고 2005다33121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5. 6. 9 선고 2004나42618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◆휘

피고, 상고인 피고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△치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나42618 판결

판결선고 2007. 10. 26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출하자 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업자인 소외 1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, 이를 다시 소외 2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,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그 거래시마다 원고와 소외 2에게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다만 위 2002. 12. 28.자의 이 사건 거래는 당일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, 위 수산시장 내의 관행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편의상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,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채무의 성립 및 통정 허위표시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,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,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,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.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주장과 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

등의 위법이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중도매인 계약의 내용, 피고가 소외 2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,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소외 2가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얻은 점, 원고가 운영하는 노량진수산물시장의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, 원심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어대금지급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2의 2002. 12. 28.자 거래로 인한 어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증책임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